

2026년 내가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법무담당관

목 차

I. 감사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3
□ 총 평	3
□ 처분지시사항 일람표	4
□ 지적사항 처분검토	5
IV. 주요 지적사항	5
V. 우수사례	10
□ 제5회 내가면 농산물 축제 개최	10
VI. 특수시책	11
□ 소통·공감 행정구현을 위한 2025년 리별 간담회추진	11
VII. 행정사항	12

2026년 내가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 [감사법무담당관-602(2026.01.15.)호] 에 따라 실시한 내가면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 사 개 요

- ☐ 감사기간: 2026. 4. 27. ~ 4. 30. [4일]
- ☐ 감사범위: 2024. 4. ~ 2026. 3. [2년]
- ☐ 감 사 반: 감사담당 외 3인
- ☐ 감사중점사항
 - 군정 주요 시책 등 추진 상황
 - 물품·장비 관리 및 보안 업무 추진 실태
 - 계약 추진 및 예산 집행 적정 여부
 - 부설시공 여부 및 과다 설계 등 시설 공사 추진 실태
 - 각종 보조사업 등 공공재정지급금 운영 실태 점검
 - 장애인 및 복지대상자 관리 등 사회복지 업무 추진 실태
 - 농지관리, 경제교통 관련 업무 추진 실태
 -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 처리 실태
 -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실태 등
 - 바우처 등 지원금 관련 업무 점검
 - 청렴 관련 비공무원(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실태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기관현황[2026. 4.기준]

내 가 면 장

총무팀

현 원

5명

주민복지팀

현 원

4명

산업팀

현 원

3명

□ 정 · 현원 현황

(단위:명)

직 급 별	정 원	현 원	과 부 족	비 고
계	14	13	△1	
5 급	1	1		
6 급	3	4	1	
7 급	4	5	1	
8 급	5	3	△2	
9 급	1	-	△1	
기 타	2	2		환경공무원

□ 기관특성

- 내가면은 강화 서쪽에 위치하여 서해의 수려한 낙조와 고려저수지, 천년고찰 적석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으로, 특히 전국적인 명성의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은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며, 비옥한 간척지에서 재배되는 강화섬쌀과 청정 해역의 수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풍요로운 농·어업 복합 지역임
- 내가면사무소는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농·어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유연하고 전문적인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이끄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 총 평

- 이번 종합감사는 내가면에서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음
- 전반적으로, 회계 관리 및 복무, 주민등록·인감 분야 등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계약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으며, 시설 공사 하자검사를 적기에 완료하는 등 각 분야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그러나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 관리, 주민등록·인감·민원처리, 복지 서비스, 농업 보조사업, 농지취득자격증명, 건설·도로 유지관리, 공용 차량 관리, 직원 복무관리 등 주요 분야 점검 결과 총 21건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어, 이 중 시정 7건, 주의 14건, 재정상 조치 4건(*,***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 1명을 요구하게 되었음
-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신속히 보완·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업무 연찬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면 업무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각종 보조사업, 계약 업무 등 추진 시 관리자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 관리가 필요함

□ 감사 지적 사항 총괄

처분 요구(건)			재정상 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건/명)		
계	시정	주의	계	추정	추급	환수	계	훈계	주의
21	7	14	4/*,***	2/**	1/***	1/*,***	1/*	1/*	-

※ 현지조치 1건

□ 처분지시사항 일람표

○ 본처분 지적사항(21건), 현지조치(1건)

연번	제 목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원)	
1	업무추진비 집행 운영 관리 미흡	주의			
2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주의			
3	공무원 특별휴가 관리 소홀	시정			
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소홀	주의			
5	이륜자동차 신고업무 처리 소홀	주의			
6	보조사업 업무 추진 소홀	주의			
7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8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업무처리 소홀	시정		(추징) *,***	
9	건설업 자격요건 검토 소홀	주의			
10	단일사업 분할 발주	주의			
11	설계변경 업무 소홀	주의			
12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소홀	주의			
13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주의			
14	준공감사 업무 소홀	시정		(환수) *,***,***	
15	경로당 시설지원 보조사업 업무 부적정	주의	훈계(*)		
16	장애의무 재판정 관리 소홀	주의			
17	생일축하금 지급 소홀	시정		(추급) ***,***	
18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소홀	주의			
19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업무 소홀	시정		(추징) **,***	
20	수의계약 체결제한 의무이행 확인 소홀	주의			
21	비공무원(기간제)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현지	인감증명 전출자 인감이송 업무 소홀	현지주의			

□ 지적사항 처분검토

[처분요구사항] 시정요구 7건, 주의요구 14건

- 내가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총 21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재정상 추징 2건, 환수 1건, 추급 1건을 포함, 업무상 7건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14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주의를 촉구하고자 함

[재정상 조치] 4건(*,***천원)

- 추징 2건(**천원), 환수 1건(*,***천원), 추급 1건(***천원)

[신분상 조치] 1건 / *명(훈계 *명)

IV 주요 지적사항

1. 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관리 소홀

- | | |
|----------------|--|
| 위법
부당
내용 | <p>1.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동 법률 제10조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내가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조달능력(자부담확보) 검토를 위한 자부담 예치 등의 확인 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
|----------------|--|

	교부결정을 통지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통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 2. 보조사업자 정산검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의 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거래승인내역서 및 그 밖에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출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따라 해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농·임업용 기자재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조금 정산을 추진해야 함 ○ 그러나 내가면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 시 절차에 따라 정산보고서와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후 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보조금 정산 시 구비서류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등 보조사업의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 요구	○ 주의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2. 준공검사 정산 업무 소홀

위법 부당 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 검측하고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함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액은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내가면에서는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준공서류의 증빙자료,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면밀히 확인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처분 요구	○ 시정 ⇒ 정산 소홀에 따른 준공금 *,***,***원 환수

3. 경로당 시설지원(생활집기) 보조사업 미정산

위법 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

	하여야 하고,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잔액 또는 부당 집행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2026년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의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편철·관리하여야 하며, 연말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그러나 내가면에서는 2024년도 ○○○○ ○○○○○(○○○○○) ○○○○○ ○○○사업 1차 ~ 4차 총 **건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집행내역의 적정성, 집행잔액 발생 및 반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 요구	○ 주의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4. 생일축하금 지급 소홀

위법 부당 내용	○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4조(지원기준)에 따르면 생일축하금이란 강화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생일을 맞이할 경우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금액은 연20만원으로 대상아가 출생한 해 다음 연도부터 6년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수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내가면에서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의 지원기간이 남았음에도 지원을 종료하여 생일축하금 지급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처분 요구	○ 시정 ⇒ 미지급 생일축하금 ***,***원 추급

5.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업무 소홀

위법 부당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 시 등록 등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르면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음 ○ 그러나 내가면에서는 총 4건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대상자가 “별도 의견없이 자진납부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음. 또한, 그중 1건은 ‘의견 없이 자진 납부’ 하겠다는 의사를 사유로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과태료가 부과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되는 등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 요구	○ 시정 ⇒ 부적절하게 감경 부과된 과태료 부족분 **,***원 추징

제5회 내가면 농산물 축제 개최

- ❖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매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행 사 명 : 제5회 내가면 농산물 축제
- 기 간 : 2025. 10. 10.(금) ~ 10. 12.(일) [3일간]
- 장 소 :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주차장
- 주최/주관 : 내가면 / 내가면주민자치위원회
- 주요내용
 - 운영본부, 먹거리 및 농산물 판매부스, 전시존·포토존 운영
 -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 운영

□ 추진성과

- 지역 축제인 새우젓 축제와 연계하여 내가면 주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주민 주도형 축제 운영 기반 마련

□ 관련사진



VI 특 수 시 책

- 소통 · 공감의 행정구현을 위한 - 2025년 리별 간담회 추진

- ❖ 리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 사항 청취와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면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일 시 : 2025. 7. 21. ~ 7. 31.
- 대 상 : 14개리(고천5, 오상3, 외포2, 황청2, 구하2)
- 진행방법 : 마을별 간담회 진행(오전 · 오후)
- 주요내용 : 군정(면정) 및 중요사항 홍보 및 마을 현안사항 논의

☐ 추진성과

- 군정(면정)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행정 참여와 관심도 제고
- 리별 세부 현안 및 관심사항 청취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

☐ 관련사진

